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1.10	번식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0102.10	번식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번식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에 한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럿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 ets)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106.90	기타	완전생산지기준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1.30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2.30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3.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23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43	뼈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4.50	산양의 고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500	말 · 당나귀 · 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	식용설육(屑肉)(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 또는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1	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2	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3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41	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8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6.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1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3	절단육 및 설육(屑肉)(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4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5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6	절단육 및 설육(屑肉)(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207.32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3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4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7.36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토끼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30	영장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4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5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09.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염장한 것 ·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한 것 · 염수장한 것 · 건조한 것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210.11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20	쇠고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2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0210.93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210.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1 류는 제외한다)
	제 3 류	
	어류 및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0	관상용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1.92	뱀장어(앵굴라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	완전생산기준
0301.94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완전생산기준
0301.95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2.12	태평양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 [살모 살라 (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3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2.35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4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2.5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2.61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2.62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2.6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2.64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2.65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66	뱅장어(앵귌라종)	완전생산기준
0302.6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2.68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2.6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7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옹코링쿠스 넬카)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3.2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3.22	대서양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종)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41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완전생산기준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투우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완전생산기준
0303.45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완전생산기준
0303.5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완전생산기준
0303.6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완전생산기준
0303.6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71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완전생산기준
0303.72	해덕(멜라노그라투스 애그레피누스)	완전생산기준
0303.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완전생산기준
0303.74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완전생산기준
0303.75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76	뱀장어(앵귌라종)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3.77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 · 디센트라쿠스 펀크타투스)	완전생산기준
0303.78	민대구(메루키우스종 · 유르피키스종)	완전생산기준
0303.7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80	간과 어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 및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1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1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2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2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	건조 ·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10	어류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 훈제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0	어류의 필레(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1	태평양연어(웅코링쿠스 넬카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웅코링쿠스 케타 · 웅코링쿠스 차비차 · 웅코링쿠스 키수츠 · 웅코링쿠스 마소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 클루페아 팔라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5.63	멸치(엔그로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한 것 또는 염수장한 것 ·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13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완전생산기준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 파누리루스종 · 자수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완전생산기준
0306.23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분 ·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고,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갑각류를 제외하고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10	굴	완전생산기준
0307.2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3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4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5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91	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물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3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1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1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 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3.10	요구르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	치즈와 커드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종류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4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90	그 밖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7.00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및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그 밖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8.11	건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91	건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9.00	천연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 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2.10	돼지털·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 했는지에 상관없다) 및 새의 솜털(청정·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솜털, 충전재용 깃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 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 · 사슴뿔·발굽·손톱·발톱 및 부리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 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 빋(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 (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	소의 정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및 제 02 류는 제외한다)
	제 6 류	
	산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인경·괴경·괴근·구경·관근 및 근경 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괴경·괴근·구경·관근 및 근경 으로서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불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삼수 및 접수, 버섯의 종균	
0602.10	뿌리가 없는 껌꽃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 속의 식물(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건조·염색 ·표백·침투 또는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그 밖의 부분(꽃 또는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건조·염색·표백· 침투 또는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10	이끼와 지의(地衣)	완전생산기준
0604.91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7 류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21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 (仙茅)·셀러리악·무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셀러리악(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709.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쿰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2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30	시금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40	스위트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그 밖의 저장용액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1.2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4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5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1.90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20	양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2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0713.31	녹두[비그나 멩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샬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및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8 류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1.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탈각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2.40	밤(카스타네아종)	완전생산기준
0802.50	피스타치오	완전생산기준
0802.60	마카다미아 너트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00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 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바(guava)·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805.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및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20	배 및 마르멜로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버찌·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09.20	버찌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빌베리와 그 밖의 박시니엄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언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즈베리(gooseberr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그 밖의 저장용액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10	버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814.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 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커피의 함량을 불문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2.10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발효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3.00	마테(mat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	후추(파이버속의 것에 한한다), 건조 또는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2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건조한것 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0709.60 호 또는 제 0710.8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905.00	바닐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Cinnamomum zeylanicum Blum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7.00	정향(丁香)(과실·꽃 및 꽃대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0908.10	육두구(肉荳蔻)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8.20	메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8.30	소두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 주니퍼의 열매	
0909.1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20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30	커민(cumin)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40	캐러웨이(caraway)의 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9.50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	생강·사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그 밖의 향신료	
0910.10	생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	
1001.10	듀럼종의 밀	완전생산기준
10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00	호밀	완전생산기준
1003.00	보리	완전생산기준
1004.00	귀리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00	수수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 · 밀리트 및 카나리시드,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1008.20	밀리트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2.10	호밀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 · 조분 및 펠리트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103.11	밀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20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 · 입 및 펠리트	
1105.1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및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7 류는 제외한다)
1105.2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및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7 류는 제외한다)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및 가루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6.20	사고(sago) 또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08 류는 제외한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107.10	볶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7.20	볶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8.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3	감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19	그 밖의 전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20	이눌린(in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 류 및 제 10 류는 제외한다)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곡물,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00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또는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완전생산기준
1202.2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전생산기준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 유채(rape, colza)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207.20	면실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또는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1	루우산(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 로오리엄 페레네 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	
1210.1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0.20	호프[잘게 부순 것·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사용되는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0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완전생산기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00	곡물의 껍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워드 · 맹골드 · 사료용의 근채류 · 건초 · 루우산(알팔파) · 클로버 · 샌 포인 · 케일 · 루핀 ·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생산품(펠리트상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2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3 류	
	락, 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 및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1	아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호프(hop)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 ·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1	한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302.3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 (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 라피아, 청정 ·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10	대나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20	등나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00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2.00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 (oleo-oil) 및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또는 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	어류 또는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30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10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	조유	
15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21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2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51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조유(粗油)	
15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9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	그 밖의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 (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1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21	조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나,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	마가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엑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8.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 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52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랍·그 밖의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1.10	식물성 납(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6 류	
	육류·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소시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	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1	칠면조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50	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00	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1	연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2	청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 및 브리스링(brisling) 또는 스프랫(spr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604.15	고등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6	멸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3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1605.10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20	새우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30	바닷가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40	그 밖의 갑각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7 류	
	설탕 및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1701.11	사탕수수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12	사탕무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 (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 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704.1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4.00	코코아 버터[지(fat)나 유(o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20	그 밖의 조제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31	속을 채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생산물	
1901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06 호 및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06 호 및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그 밖의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 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30	그 밖의 파스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40	쿠스쿠스(cousco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 (corn flake)],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 (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30	불거소맥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06 호는 제외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1	스위트 비스킷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와플과 웨이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그 밖의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3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20	송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90	그 밖의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	조제 또는 달리 저장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2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1	껍데기를 벗긴 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7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1	죽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marmalade)·과 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1	감귤류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8	달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견과류와 식용에 적합한 그 밖의 식물의 부분(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11	땅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20	파인애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감귤류의 과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40	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50	살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60	버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70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80	초분류 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1	팜 하트(palm hea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2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11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009.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50	토마토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1	브릭스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1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0	그 밖의 모든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 · 차 또는 마테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 · 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101.12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20	차 또는 마테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러한 엑스 ·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30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20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분 및 조분과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5 퍼센트 이상일 것
2104	수프 · 브로드와 수프 · 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10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 제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제 22 류	
	음료·주류 및 식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얼음 및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2203.00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뮷 및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및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30	위스키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60	보드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	
2301	육 또는 설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지박	
2301.1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수지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1.20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미강과 그 밖의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또는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30	밀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그 밖의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및 그 밖의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얻어지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레이프 (rape) 또는 콜자(colza)]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7.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 [펠리트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4 류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	시가 · 셔루트 · 시가릴로 및 궤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및 시가일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	퀄런(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	그 밖의 제조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0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5 류	
	소금, 황, 토속류, 석고, 석회와 시멘트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및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바닷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00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	천연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 규암[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珪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30	내화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50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珪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70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2.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12	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20	에코신과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12	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17.10	자갈 · 왕자갈 · 쇄석(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 또는 그 밖의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20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2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0.10	석고,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20	플라스터(pl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1.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및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	포트랜드시멘트 · 알루미나시멘트 · 슬래그시멘트 · 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1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	석면	
2524.10	청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	운모(또한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	
2525.1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갬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8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8.10	천연나트륨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529.30	백류석, 하석과 하석 성장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2530.1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6 류	
	광·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12	응결시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10	볶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그들의 정광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 (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 (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	슬래그(slag), 회(灰) 및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21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60	비소·수은·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학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91	안티모니·베릴륨·카드뮴·크로뮴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켄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상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2702.1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706.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의 물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30	크실올(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 (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 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1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 2710 호로부터의 변경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 탄화수소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및 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 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 (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	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그 밖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3.11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12	하소(煨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20	석유역청(瀝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90	그 밖의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8 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규정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 28 류부터 제 38 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 3823 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그러한 화학반응이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문맥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반응” 규정은 상기 류에 분류된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 :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 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5 류까지와 제 38 류의 목적상, 정제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정제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한한다. 가. 정제의 결과로 기존 불순물의 함량 대비 80 퍼센트의 불순물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적용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규칙 3. 혼합 및 배합 원산지규정 제 30 류 및 제 31 류, 제 3302 호, 소호 제 3502.20 호, 제 3506 호부터 제 3507 호 및 제 3707 호의 목적상,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는 상이하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원산지규정 제 30 류 및 제 31 류의 목적상, 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축소[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 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나.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단순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2 류까지와 제 35 류 및 제 38 류의 목적상,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 (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규칙 6. 이성체 분리 원산지규정 제 28 류부터 제 32 류까지와 제 35 류의 목적상,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비원산지 물질/구성요소는 인조혼합물에서 단순히 한 개 이상의 개별적인 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분리한 결과로서, 세번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칙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분리된 물질/구성요소는 그 자체로 또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801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및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30	플루오르,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2.00	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	수소 · 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50	붕소,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20	클로로황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7.00	황산,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8.00	질산,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1	이산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2	이산화규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	비(非)금속의 황화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수산화칼륨(가성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2815.11	고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12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	수산화마그네슘 및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4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	
2818.10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 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20	어스컬러(earth colou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2.00	산화코발트 및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	산화연, 연단 및 오렌지연	
2824.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60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80	산화안티모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20	염화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5	니켈 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1	구리염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상의 하이포아 염소산칼슘, 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11	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0.10	황화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30	티오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	황산염, 명반,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1	황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1	황산마그네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2	황산알루미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4	황산니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5	황산구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7	황산바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30	명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1	질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폴리인산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2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4	인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5	오рто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40	탄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50	탄산칼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60	탄산바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1	탄산리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2	탄산스트론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	시아나화물 · 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안착염	
2837.11	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20	시아나착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1	무수물(無水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20	그 밖의 붕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1	과망간산칼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70	몰리브덴산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	그 밖의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 (아지화물을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1	질산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30	금 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90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	방사성화학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2844.10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3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 (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40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호·제 2844.20호 또는 제 2844.30호의 것을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 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체(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	동위원소(제 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또는 스칸듐 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8.00	인화물(磷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9.10	칼슘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20	규소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0.0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00	무기 또는 유기 수은화합물(아말감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3.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 (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 (amalga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9 류	
	유기화합물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1	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4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1	시클로헥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20	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30	톨루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1	오르토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2.43	파라크실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50	스티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60	에틸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70	큐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4	사염화탄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 이염화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2	삼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 디브로모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1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2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5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불소와 염소만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에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7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1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 SO · INN)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61	클로로벤젠 ·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3.62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20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2	1 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 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4	그 밖의 부탄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 (스테아릴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 (트리메틸올프로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3	만니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5	글리세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1	멘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6.12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1	벤질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2	크레졸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 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60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30	1 클로로 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하이드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40	디엘드린(ISO, 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1.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1	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30	알데히드-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1	바닐린(4 히드록시 3 메톡시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2	에틸바닐린(3 에톡시 4 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	케톤 및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1	아세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1	장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의 케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1	안트라퀴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70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1	포름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2	포름산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1	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4	무수(無水)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1	초산에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2	초산비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6	초산디노셉(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60	부탄산 · 펜탄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70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 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5	올레산 ·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5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6	비나파크릴 (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	폴리카르복시산 ·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3	아젤라산 · 세바스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4	무수말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7.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5	무수프탈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2	타르타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4	시트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3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1	2,4,5 티(ISO)(2,4,5 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 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 및 파라티온메틸(ISO) (메틸파라티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1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30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1	아닐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3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 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6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덱스암페 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 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 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 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31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2923.10	콜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1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4	에티나메이트(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 디페닐부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8.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키아바메이트와 디티오키아바메이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40	메티오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50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00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1	쿠마린 · 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9	그 밖의 락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1	이소사프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3	피페로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4	사프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1	피리딘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3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 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 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 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 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 (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 (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1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3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 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도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 르비탈(INN) · 펜도바르비탈(INN) · 페노바르 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 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5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 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1	멜라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1	6-헥산락탐(엡실론-카프로락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티프릴론(IN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9	그 밖의 락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1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 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 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 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 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 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 (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 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 (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해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불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30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1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 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텍스트로모 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 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5.00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 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2	비타민 B1 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3	비타민 B2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4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5	비타민 B6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6	비타민 B12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7	비타민 C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8	비타민 E 와 그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1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 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31	에피네프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40	아미노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INN) · 헤로인 · 히드로코돈(INN) · 히드로모르핀(INN) · 모르핀 · 니코모르핀 (INN) · 옥시코돈(INN) · 옥시모르핀(INN) · 폴 코딘(INN) · 테바콘(INN) 및 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1	코카인 · 에크코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 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및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 · 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50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 류	
	의약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선(腺)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1.20	선 또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 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및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품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및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 또는 그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 또는 그 밖의 물품 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 ·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 그 밖의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5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는 제외한다)
3005	탈지면 · 거즈 ·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 반창고 · 습포제)으로서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 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	의약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것에 한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및 살균한 수술상처 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 (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 (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7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2	폐의약품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1 류	
	비료	
3101.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102.6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 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의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3 종의 비료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2 종의 비료요소인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 및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엑스,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3201.10	퀘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 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 유기물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5.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 또는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1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 및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및 조제 그림물감 · 범랑 및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또는 유리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07.10	조제안료 · 조제유백제 ·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유리 프리트와 그 밖의 유리(분상 ·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 및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 · 래커(lacquer) 및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및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 또는 간판도장공용· 정색용·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둥글넓적한 모양의 것·튜브들이· 병들이·접시들이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 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 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그 밖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솔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 (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 (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 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 (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1.12	오렌지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3	레몬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하며, 썬스크린 또는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30	가향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4 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 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및 부직포	
3401.11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조제계면 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 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3401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3	비이온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그 밖의 재료의 처리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그 밖의 재료의 처리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 용·유리용 또는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 (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405.10	신발 또는 가족용의 광택제·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2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3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및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 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 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 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글루	
3501.10	카세인(casei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11	건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20	글루(glu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 안개 신호용품 및 그 밖의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1.10	엑스선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2 호는 제외한다)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2.10	엑스선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701 호는 제외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32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702.51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1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95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3	사진인화지 · 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703.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3.20	기타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4.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3707.10	감광유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물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인조흑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물품,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3.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4.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 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 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런던	
3806.10	로진(rosin)과 수지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06.20	로진염·수지산염 또는 로진이나 수지산의 유도체(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30	에스테르 검(ester gum)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7.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 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 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 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조제품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 및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1	살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2	살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3	제초제·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4	소독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 가죽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 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09.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땀질용 또는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 · 땀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땀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 (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	안티녹(anti-knock)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1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2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3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6.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 (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 ·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 · 인간 또는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1	스테아르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2	올레인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3	톨유(tall oil) 지방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24.3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4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 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 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 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20	하수 찌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825.30	감염성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의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3.11	발포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그 밖의 비닐 에스테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그 밖의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1	공중합체(共重合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	폴리아세탈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폴리 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1	불포화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09.1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09.30	그 밖의 아미노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숄파이드 · 폴리숄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그 밖의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11.10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12.11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 및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13.10	알긴산 · 그 염 및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과 스크랩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90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 막대(rod, stick) · 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90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	
3917.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스(sausage cas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 [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달리 결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40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 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 · 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 (sheet)·필름·박(箔) 및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20.43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3	초산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판 · 시트 · 필름 · 박 및 스트립	
3921.11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2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과 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플라스틱제의 뚜껑 · 마개 · 캡 및 그 밖의 덮개류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1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3923.30	카보이병 · 병 ·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40	스폴 · 콤파 ·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50	뚜껑 · 마개 · 캡 및 그 밖의 덮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5.10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2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3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 (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30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 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 (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 · 시트 (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01.30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 ·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 · 시트 (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 ·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또는 판 · 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5.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2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1	판 · 시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 · 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	고무제의 판·시트·스트립·막대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4008.11	판·시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1	판·시트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또는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 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 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30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40	모터사이클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5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1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2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2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3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4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및 타이어 플랩(flap)	
4012.11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2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3	항공기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2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또는 의약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4015.11	외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1	바닥 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3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4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017.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 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생 것· 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50	전신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1	산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건조 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 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 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03.2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3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 (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4.11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1	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4104.41 호는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5.1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3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4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젖은 상태에서 건조된 상태 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세번 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4106.9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2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3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4.10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2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115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 (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 시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2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그 밖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 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 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 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 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 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1	외부표면이 가죽, 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1	외부표면이 가죽, 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 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 또는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6.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또는 건(臃)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 을 포함하며, 제 4101 호 · 제 4102 호 또는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 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301.6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80	그 밖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90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 및 그 밖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그 밖의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멜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침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1.10	멜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30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02	목탄(셀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10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뜯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 [지팡이 · 산류(傘類) · 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 · 횡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5.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	
4406.1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핑거-조인트한(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1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2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6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 (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7	사펠리(Sapell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8	이로코(Irok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1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및 그 밖의 목재 [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 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 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 마구리 ·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 · 홈가공 · 은축이음가공 · 경사이음가공 · 브이형이음가 공 · 구슬형가공 · 주형가공 · 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 (예: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0.11	파티클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2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을 초과하고 0.8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합판 ·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품	
4412.10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4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 (laminboard) 및 배튼보드(batten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 (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4.00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 (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렛(pallet), 박스팔렛(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러(pallet collar)	
4415.10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20	팔렛(pallet) · 박스팔렛(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러(pallet coll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6.00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브(tub) 및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 신발의 나무로 만든 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 패널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지붕이 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20	문 ·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50	지붕을 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60	기둥 및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9.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제 상자와 용기, 목제의 조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목제의 가구	
4420.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파쇄 · 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4501.10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2.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의 블록 모양 · 판 모양 · 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 (blank)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4504.10	블록 · 판 · 시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6 류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 · 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1.2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2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2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3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 (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1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2	등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3.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1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에 한하며, 용해용의 것을 제외한다)	
4704.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1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5.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또는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2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30	기타(대나무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707.1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지 또는 판지제(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3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9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및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 [제 4801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 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	수제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20	사진감광성, 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40	벽지용의 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 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1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 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 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03.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crinkl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또는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처리 또는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805.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	황산지 · 내지지 · 트레이싱지 및 그라신지와 그 밖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20	내지지(耐脂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40	그라신지와 그 밖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7.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 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 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 (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록볼록 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파형의 지와 판지(구멍을 뚫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20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 (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록볼록한지(embossed) 또는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30	그 밖의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록볼록 한지(embossed) 또는 구멍을 뚫었는지 (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 [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 (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 표면장식 또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13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4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 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 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 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2	여러 겹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 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 또는 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한 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6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stearin) · 기름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90	그 밖의 지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2.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	꺾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13.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4.10	인그레인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 (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 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지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 (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9 호는 제외한다)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4809 호는 제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 ·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및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20	봉함엽서 ·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17.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 및 필기침(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 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 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 트(serviette)·유아용 냅킨·탐폰(tampon) ·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 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20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40	위생 타월 및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및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위생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50	의류와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 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 포장대 및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 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2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 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 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 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 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 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3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홀더 및 서철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한다)	
4821.10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 스폴·콤팩트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	그 밖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 (sheet) 및 다이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1	대나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7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49 류	
	인쇄서적 · 신문 · 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 · 타자문서 및 도면	
4901	인쇄서적 · 소책자 · 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1.10	단매의 것(접어포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1	사전 · 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	신문 · 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 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3.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 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	지도 및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차트 (제본한 것 · 벽걸이용의 것 · 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 공학용 · 공업용 · 상업용 · 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 에 사진복사 및 카본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 · 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 · 주권 또는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 (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서 그림·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종류를 불문하고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 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 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1	서화·디자인 및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0 류	
	견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 (waste) 및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00	견사 및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 호 또는 제 5005 호는 제외한다)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견 노일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90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1.1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101.30	탄화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20	동물의 거친 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	양모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사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2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그 밖의 웨이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4.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넷스톡(garnetted st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양모 및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3.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 류	
	면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1	가아넷스톡(garnetted st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5 호 또는 제 5206 호는 제외한다)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5 호 또는 제 5206 호는 제외한다)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3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1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3	3 올 또는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210.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1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3	3 올 또는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2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	그 밖의 면직물	
52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5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4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5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301	아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 및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아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 지사	
5308.10	코이어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309.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 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2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 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1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 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2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 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1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1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 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 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 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 (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61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4	인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5501.1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은 제외한다)	
5503.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은 제외 한다)	
5504.1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실의 웨이스트 및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 이나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 한다]	
5506.1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공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3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5510.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20	그 밖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30	그 밖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90	그 밖의 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1.3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3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3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6 류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및 케이블과 그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제의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5601.10	워딩제의 위생 타월과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위생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30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	펠트(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602.10	니들룸 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및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 (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 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 (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 [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망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9.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1.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 (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 (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50	그 밖의[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 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702.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터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3.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2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 (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4	경(經)파일(pile)직물 · 에핑글(épinglé)(절단 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5	절단된 경파일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4	경(經)파일(pile)직물 · 에핑글(épinglé)(절단 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801.35	절단된 경파일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2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테리타월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30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	뿔(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작한 것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 · 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뿔(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30	수제의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5.00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5806.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및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총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806.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덱)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 (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	자수포(원단상·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1	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2	인조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2.10	나일론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	리놀륨, 방직용 섬유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5.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것으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및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 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40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파일 직물("롱파일" 직물과 테리 직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의 것에 한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4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 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3 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1.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6104 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2.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6104.1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04.6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5.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	여성용이나 소년용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7.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	여자 또는 소년용의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8.1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	저지 · 폴오버 · 카디건 ·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	유아용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1.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2.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1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1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3.00	의류(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4.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1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2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4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5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6117.10	쇼울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카코트 · 케이프 · 클룩 · 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 · 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6204 호의 것을 제외한다)	
6202.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3.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양상블 · 재킷 · 블레이저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3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205.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3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	여성용이나 소년용 블라우스 · 셔츠 및 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3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06.4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 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 · 브리프 · 팬티 · 나이 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08.11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	
6209.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40	남자 또는 소년용의 그 밖의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50	여자 또는 소녀용의 그 밖의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및 수영복, 그 밖의 의류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1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2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 · 브레이스 · 서스펜더 · 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	손수건	
6213.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	쇼울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2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30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4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20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및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 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 · 테이블린넨 ·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2.3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2.5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으로서, 면제의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인조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2.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및 실내용 블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6303.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3.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4.93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의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90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	타포린·천막 및 차양, 텐트, 보트·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 돛, 캠핑용품	
6306.1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06.1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2	합성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돗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1	면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9	그 밖의 섬유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닥이포 · 접시닥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8.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 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 코디지 · 로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6310.10	선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 · 리베팅 · 네일링 · 스크루잉 · 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2.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팩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 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heel cushion)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1	목재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도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2.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고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또는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5.10	헤어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7.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602.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및 부속품	
6603.2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7 류	
	조제 깃털 및 솜털과 조제 깃털 또는 솜털의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 · 깃털의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 (scape)와 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	인조 꽃 · 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 · 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90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 · 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	가발 · 가수염 · 눈썹 및 속눈썹 · 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 인모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90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8 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 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	포석 · 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02	가공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 [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6802.1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 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1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1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버리기용 · 광택용 · 정형용 또는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지석 (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1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2	그 밖의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05	방직용 섬유재료 · 지 · 판지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기제로 한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특정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봉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 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또는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 나 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 · 팽창점토 ·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또는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료 응결 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09.11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1	파형의 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2	그 밖의 쉬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3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 또는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1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및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2	지 ·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3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 · 롤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 · 디스크(disc) · 와셔(washer) · 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그 밖의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 (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 · 판지 또는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4.10	판 ·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	석제품 또는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815.10	비전기용 흑연 또는 그 밖의 탄소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9 류	
	도자제품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아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 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2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	그 밖의 내화성의 도자제품 (예: 레토트·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 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2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 (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 서포트타일 또는 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흙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7.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8.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 또는 그 밖의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의 통, 튜브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변기통 · 수세식 변기용 물통 ·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깨진 유리 및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 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1	용융석영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 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유리[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 및 그 밖의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보존병,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2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 (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 (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 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 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 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 ·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그 밖의 유리세공품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17.10	용융석영 또는 그 밖의 용융실리카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20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과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 (microsphere)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018.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 · 직물)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 · 귀석 또는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로 꿰 것 · 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을 제외한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장착 또는 세트로된 것을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갬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1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갬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1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 (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않은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 것)	
7103.1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1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	합성 또는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등급을 매기지 않은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 것)	
7104.10	압전기용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20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반가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11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그 밖의 반가공 형상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화폐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3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스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	모조신변장식품	
7117.11	커프스 링크와 스테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그 밖의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8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1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 · 펠릿 (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1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 (filing) · 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 (stamping)(변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	입과 분(선철 · 스피그라이즌 · 철강의 것에 한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 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5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2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3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5 호 로부터의 것은 제외한다)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6 호 로부터의 것은 제외한다)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3 호 및 제 7217 호로부터의 것은 제외한다)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유(U)형강 · 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 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 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압연 ·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30	그 밖의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2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1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 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 강의 중공(中空)드릴봉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30	그 밖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40	그 밖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널말뚝(천공 또는 조립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철강제의 용접된 형강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 (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 plate)·좌철(座鐵)·좌철(座鐵)뺀기·밑판(s 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 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 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30	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7304.1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 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2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	철강제의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와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와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00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및 기둥], 구조물 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30	문 · 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40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또는 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1	납땀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얹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 및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鉄)·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및 울타리,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	
7314.12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1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1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 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 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 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1	스프링와셔와 그 밖의 록와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20	안전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30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 레인지(range) · 화상(火床)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2	액체연료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2	액체연료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2	주철(鑄鐵)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3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4	철강(주철을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령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	철강제의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325.9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	
7326.11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 (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	구리의 분과 플레이크	
7406.10	비(非)총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20	총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	
7407.10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1	구리-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8	구리의 선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408.21	구리-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2	구리-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구리- 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9	구리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40	구리-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구리- 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9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0	구리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410.11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12	구리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1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2	구리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1	구리제의 관	
7411.10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1	구리-아연 합금의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2	구리-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구리- 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2	구리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	
7412.10	정제한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2.20	구리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415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 (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 루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 (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 (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3	스크루, 볼트와 너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1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	구리제의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1	주조 · 주형 ·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1.20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	니켈의 괴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 및 선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	니켈의 판 · 쉬트 · 스트립 및 박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	니켈제의 관과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 엘보 · 슬리브)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20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	니켈선제의 클로드 · 그릴 및 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3.1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20	충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4.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605.21	형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6.1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1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	알루미늄제의 관	
7608.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20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8 호는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 및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접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또는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1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	알루미늄제의 그 밖의 제품	
7616.1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1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 그릴 · 망 및 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괴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	납의 판 · 시트 · 스트립 및 박, 납의 분과 플레이크	
7804.11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두께 (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 · 분과 플레이크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4.00	아연의 봉 · 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5.00	아연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3.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4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6	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4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5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6	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	탄탈룸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3.20	탄탈룸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및 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12.12	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웨이스트와 스크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 · 도구 · 칼붙이 · 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 삽 ·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포크와 쇠스랑, 도끼 · 발hook(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 · 초절기(草切機)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공구	
8201.10	가래와 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20	포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3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및 쇠스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40	도끼 · 발hook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60	울타리전단기 · 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90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 · 슬로팅(slotting)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 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2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30	금속 절단용의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40	파이프커터 · 볼트크로퍼 · 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30	목재가공용의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1	가정용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70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80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9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스싱(pressing) 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 태핑(tapping)용 · 드레딩(threading)용 · 드릴링(drilling)용 · 보링(bor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밀링(milling)용 · 터닝(turnin g)용 또는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 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프레스 · 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07.5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mill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터닝(turn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20	목재 가공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3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40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용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4	칼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90	그 밖의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2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 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 ·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20	카스터(c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30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 (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 (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letter corner)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30	사진틀 ·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307.10	철강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프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kle)걸쇠 ·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 신발류 · 차양 · 핸드백 · 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	훅(hook) · 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 · 캡과 뚜껑(크라운 코르크 · 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 · 병용의 캡슐 · 나선형의 마개 · 마개용 커버 · 실 및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 · 봉 · 관 · 판 · 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 · 납접 · 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20	비금속제의 선(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311.30	비(卑)금속제의 도포된 봉과 심이 충전된 선(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및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3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20	과열수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 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20	스팀 또는 그 밖의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볼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91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액체엘리베이터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또는 그 밖의 가스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1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창용 · 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1	냉장 유닛과 냉 · 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5.83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그 밖의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1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 ·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 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11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2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1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	캘린더기 또는 그 밖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1	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강통· 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봉합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병·강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또는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의 저울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 (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1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 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 (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 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6.11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1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28.90	그 밖의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 컬셔블(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 (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및 로드롤러 (road roller)	
8429.11	무한 궤도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래퍼(scr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0	그 밖의 이동용 · 정지(整地)용 · 지균(地均)용 · 스크래핑(scraping)용 · 굴착용 · 탬핑(tamping)용 · 콤팩팅(compacting)용 · 채굴용 또는 천공용 기계(토양용 · 광석용 또는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향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1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1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1	버켓(bucket) · 셔블(shovel) · 그랩(grab)과 그립(gri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 의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 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0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 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8433.11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3.30	그 밖의 건조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1	수확 · 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 [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새의 알 · 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 · 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착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류	
8435.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 (家禽)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1	가금 사육용 기계류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류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류를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기계류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또는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류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류(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장치 및 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2.40	상기한 기계류 · 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 [예: 평삭(平削) ·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 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 인쇄기계류(시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접지 아니한 상태 의 시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그라비아인쇄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 용·텍스처(texture)용 또는 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 또는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 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 준비용 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직물 직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7	편직기 ·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와 짐프사(gimped yarn) · 튜(tulle)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trimming)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와 터프팅(tufting) 기계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횡(橫) 편직기,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피들 및 스피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움(comb)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heald) 및 종광 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8448.11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 · 복사 ·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스핀들 · 스핀들플라이어 ·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2	직조기용의 바디 · 종광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1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00	펠트나 부직포(원단상 또는 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또는 완성이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1	완전자동식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0.12	그 밖의 기계(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기계(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 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또는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1.40	세탁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권취기 · 재권취기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 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및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1	자동식 유닛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4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3	원피 · 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 · 유평기 또는 가공기계류 또는 원피 · 모피 또는 피혁제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재봉기를 제외한다)	
8453.10	원피 · 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 · 유평기 또는 가공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 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5.10	관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경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冷間)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 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방전·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 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8456.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 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 (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 또는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9.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0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 (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 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 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또는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 한다)	
8460.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 또는 래핑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 · 셰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또는 기어 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 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또는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펀칭용 또는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 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드로우벤치(봉 · 관 · 프로파일 ·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3.30	선 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 또는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 또는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 또는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1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 · 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 · 샌딩기 또는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또는 박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물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9.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 발행기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hectograph)나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 자동지불기 · 주화 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또는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 · 봉합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3.21	소호 제 8470.10 호 ·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 파쇄기 · 분쇄기 · 혼합기 또는 반죽기(고체 모양 · 분말 모양 ·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 · 돌 · 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 · 형입기 또는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페이스트 · 굳지 않은 시멘트 · 석고 또는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또는 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밸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5.1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밸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1	광섬유 및 광섬유 예비 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6.2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1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의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 및 그 밖의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7.80	그 밖의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8.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기(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 또는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79.60	증발식 에어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안전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2.10	볼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기타(볼/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1	볼 · 니들 및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및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 (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및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그 밖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전기접속자·절연체· 코일·접촉자 또는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87.1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1	금속제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 · 클러치와 브레이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8506.10	이산화망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에어징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와 일차배터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7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그 밖의 연산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그 밖의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이나 채소즙 추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 ·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 러그 및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1.10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 8539 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 (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그 밖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 · 제상기와 제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 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기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그 밖의 노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 한다),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 agnetic pulse)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 (plasma arc)식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 (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및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링· 그릴러 및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6.71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 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11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변환용 및 송신용 또는 재생용 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 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전기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19.20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1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부터 제 8521 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 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0	광학식 매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수신기거나 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스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7.12	포켓-사이즈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1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8528.4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1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0	철도용 · 궤도용 · 도로용 · 내륙수로용 · 주차 장용 · 항만용 또는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 · 안전기기 또는 교통관제기기 (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LCD)]나 발광 다이오드[엘이디(LED)]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 세트)에 한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無效) 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2.21	탄탈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 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 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 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그 밖의 개폐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6.61	램프홀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 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 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39	전기식의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1	아크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	
8540.11	천연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그 밖의 광전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5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으로 흑백 또는 그 밖의 단색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2	속도변조관(klys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1	수신관 또는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1	전력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 다이랙 및 트라이랙(감광성 디바이스를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 기·클록(clock)과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3.30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11	구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전기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 또는 탄소 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6.10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와 전기식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전기식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1.20	전기식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및 궤도 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와 비셀 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2	그 밖의 보기와 비셀 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30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 · 안전용 또는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1	실린더 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운송용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4.22	총중량이 5 톤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 ·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 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1	안전벨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제동장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09.11	전기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 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하고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론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1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14.93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킷 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의 자동 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 ·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 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1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89 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舢舨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 · 부잔교 · 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8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0 류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 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11	카메라용 · 영상기용 또는 사진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20	필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	안경 ·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용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9003.11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 · 보호용 또는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 · 단안경 · 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30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또는 장기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91	카메라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07.11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 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20	프로젝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91	카메라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9008.10	슬라이드 프로젝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2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 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30	그 밖의 투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40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네가토스코프,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60	영사용 스크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복합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80	그 밖의 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1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2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30	수준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40	사진측량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 · 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 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 · 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30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와 게이지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8.2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19.20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엑스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시험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기기는 제외한다)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압력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 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 ·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 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30	분광계 ·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90	마이크로톰, 부분품과 부속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 ·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20	액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30	전기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29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2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20	테스트벤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031.41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90	부분품 및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4.00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	그 밖의 클록	
9105.1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 register) · 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9109.11	알람시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 (조립된 것에 한한다),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80	그 밖의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	휴대용시계줄 · 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20	보석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	그 밖의 관악기(예: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6.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온을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fairground organ)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 · 디스크와 롤), 박절기 ·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93 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 및 리볼버(revolver), 캡티브 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303.30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의 라이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 · 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1	산탄총의 총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그 밖의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306.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4 류	
	가구,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서포트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와 램프,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항공기용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2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4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5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7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80	그 밖의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2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 · 검사대 · 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 · 치과용 의자), 회전 및 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2.10	치과용 의자 · 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30	사무실용 목재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40	주방용 목재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50	침실용 목재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60	그 밖의 목재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81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 · 누비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프(pouff)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1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그 밖의 재료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4.30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및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 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조명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1	유리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406.00	조립식 건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5 류	
	완구 ·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오락용구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 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 용 특수테이블 및 자동식 볼링장 용구를 포함한다)	
9504.1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그 밖의 게임(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 · 카니발 또는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 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 체조 · 육상 ·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 용품과 패들링폴(padding pool)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12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21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2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1	로온테니스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2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91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	낙싯대 · 낙시바늘과 그 밖의 낙시용구, 낙시용의 망 ·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유인용 새(제 9208 호 또는 제 9705 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9507.10	낙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20	낙싯바늘(낙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30	낙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	회전목마 · 그네 · 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흥행장용품, 순회서커스용 및 순회동물원용 용품, 순회극장용의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 · 뼈 · 귀갑(龜甲)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및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stearin) · 천연수지 또는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 모프(mop)와 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 [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그 밖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21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3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40	페인트용 · 디스템퍼(distemper)용 · 바니시(v 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 (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50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4.00	수동식 চে와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 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9606.10	프레스파스너 ·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1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2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6.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7.11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 · 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1	드로잉용으로서 인디언 잉크를 갖춘 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08.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연필을 제외한다), 크레용, 연필심, 파스텔, 도화용의 목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 사용의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1.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티크를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2.20	잉크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2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80	그 밖의ライタ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또는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curling pin)· 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5.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8.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HS 2007	품목명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된 원산지 규정
9701	회화 · 데생과 파스텔(손으로만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 · 데생과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2.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고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6.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